

「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」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	비 고
제20조(회사의 원천징수) ①. 1.가 (생 략) 나. 이연퇴직소득 :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	제20조(회사의 원천징수) ①. 1. 가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		
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	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	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	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
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<u>10년을 초과하는 경우</u>	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	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<u>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</u>	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
<u>< 신 설 ></u>	<u>< 신 설 ></u>	<u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</u>	<u>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50%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
<u>< 신 설 ></u>	부칙 <개정 2026. 02. 10.> 약관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		